



##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10. 31.] [국토교통부령 제1531호, 2025. 10. 31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국가물류기본계획, 시행계획) 044-201-4003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국가물류정책위원회) 044-201-3996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물류신고센터, 물류산업지원) 044-201-4000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우수물류기업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, 물류관리사) 044-201-3997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국제물류, 국제물류주선) 044-201-4005

해양수산부 (항만물류기획과) 044-200-5752, 575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)** ①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0조제2항에 따른

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2. 1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3.>

1.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2.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
3. 단위물류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

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2. 12. 3.>

[제목개정 2012. 12. 3.]

**제2조의2(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)** ① 「물류정책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

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9. 3. 19., 2025. 10. 31.>

1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
  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(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·분말로 한정한다). 다만,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.
  3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
  4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
-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: 10,000리터 이상
  2.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: 10,000킬로그램 이상
  3.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: 5,000킬로그램 이상
  4.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: 6,000킬로그램 이상
  5.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: 2,000킬로그램 이상

[본조신설 2018. 3. 19.]

**제2조의3(단말장치의 장착·기술 기준 및 점검·관리 방법)**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(이하 "단말장치"라 한다)의 장착·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
  2.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
  3.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
-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·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